

1949년 『국무회의록』의 '반민특위' 기록

이 강 수 (정부기록보존소 수집과)

I. 머리말

1990년대 이후 현대사 연구는 급속히 발전해 왔다. 연구대상도 미군정기뿐만 아니라 1960·70년대 박정희정권기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대사연구에 이용되는 자료는 몇몇 연구를 제외하면 신문·잡지 등 2차자료의 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실제 반민족행위특별위원회(이하 '반민특위'로 약칭함)의 연구는 1970년대부터 진행되어 반민법의 제정과정과 내용, 반민특위의 조직과 구성원, 반민특위 활동과 와해과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되어 왔다.¹⁾ 그럼에도 반민특위 대한 연구자료는 『反民者罪狀記』(高元燮, 白葉文化社, 1949), 『民族正氣의 審判』(革新出版社, 1949) 등의 1949년 반민특위 활동기의 간행물, 『反民特委裁判記錄』(1~17권, 다락방, 1993), 『南朝鮮過渡立法議

院速記錄』(1~5권, 驪江出版社, 1984), 『制憲國會速記錄』(1~10권, 大韓民國國會) 등의 회의록, 『自由新聞』 『朝鮮中央新聞』 『朝鮮日報』 『漢城日報』 등의 1948~50년 신문자료 등이 핵심자료로 활용되었다.

2000년도에 들어와서 반민특위 관련자의 證言資料가 활용되고 있으나,²⁾ 생존자가 거의 없어 후손들의 증언으로 대체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民主衆報』 『大邱市報』 『江原日報』 『湖南新聞』 『群山新聞』 등의 지방신문의 활용이 주목된다. 이들 地方新聞은 反民特委

1) 반민특위에 대한 전반적 이해는 이강수, 『반민특위연구』 나남, 2003 참고.

2) 반민특위 관계자의 증언에 대해서는 정운현,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삼인, 1999 참고.

道調査部の 실상을 이해하는 자료이다.³⁾ 또한 반민특위에 대한 주한미대사의 보고서도 활용되고 있다. 주한미대사의 보고서는 美國 國家記録廳(NARA)의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on affairs of Korea, 1945~1949, File 895에 포함되어 있다. 美國務省의 895 File 중 American Mission in Korea, Seoul, National Traitors Act, 1948~1949는 주한미대사가 수집한 날짜별 「보고서」라는 점에서 반민특위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이해하는 자료로 주목된다.⁴⁾ 이외에도 반민특위설립 배경, 특히 해방직후 친일파숙청논의와 관련하여 臨時政府 국무위원이고 韓國獨立黨 감찰위원이었던 金承學의 『親日派群像』, 『參考件第一』 등의 유고도 주목되는 자료이다. 金承學 유고 중 『親日派群像』은 1948년 民族政經研究所에서 작성한 『親日派群像』과 제목이 같으나 양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어 양자의 관련성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김승학이 1948년까지 韓國獨立黨에서 활동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따라서 김승학의 유고는 해방직후 한국독립당계열의 친일파숙청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⁵⁾

이상과 같이 반민특위의 연구에서 이용된 자료 중 『反民特委裁判記録』의 각종 보고서, 지

방신문, 주한미대사의 보고서 등이 최근에 일부 활용되고 있지만, 반민특위에 대한 일차자료는 『反民特委裁判記録』를 제외하면 여전히 빈약한 실정이다. 특히 반민특위는 활동 초기부터 이승만정권의 대친일과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승만정권의 반민특위에 대한 구체적 동향을 이해할 수 있는 정부측 자료는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기관의 기록, 특히 정부기록보존소의 소장기록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특성상 정부의 공식기록물, 그것도 영구·준영구의 역사적·행정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어 1차자료가 부족한 현대사 연구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공간이다. 이 중 대표적인 기록이 1949년 『國務會議錄』이다.

1949년 『국무회의록』은 아쉽게도 첨부물이나

3) 반민특위 道調査部에 대해서는 이강수, 「반민특위 道調査部の 조직과 활동」 『韓國學報』 111집, 일지사, 2003 참고.

4) 美國務省의 895 File 중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South Korea Interim Government Law, ordinances, presidential decrees, 1947~1949; American Mission in Korea, Seoul, Public Safety Law and the National Traitors Act, Records of the U. S. Department of State relation affairs of Korea, 1945~1949, File 895 등도 참고된다.

5) 金承學이 작성한 「親日派群像」과 「參考件第一」은 金承學의 증손인 현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에 있는 김병기 연구원이 보관 중이다. 이 두 책에는 모두 구체적인 친일파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해방직후 친일파숙청논의에 대해서는 이강수, 「해방직후 남·북한의 친일파숙청논의 연구」 『全南史學』 제20집, 2003 참고.

관련내용이 빠진 경우가 많아 그 자체만으로 각 사안별 내용과 성격을 모두 이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그럼에도 이승만정권 최고 통치권자의 정책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매우 높다. 이 『국무회의록』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노덕술 석방에 대한 지시만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이 “依命親傳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를 비밀조사하여 선처”하라는 〈通牒〉를 보냈다는 사실, 정부와 특위가 “합동좌담회”를 개최하여 반민법 제5조 해당자문제를 타협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는 사실 등 기존 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반민특위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盧德述 석방에 대한 건

1949년 국무회의는 1월 3일 제1회를 필두로 12월 31일까지 총 116회를 개최했다. 이중 반민특위와 관련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나 각급 장관의 보고는 다음과 같이 총 31건이 확인되고 있다.

〈표 1〉 1949년 『國務會議錄』의 반민특위 관련 기록

구분	노덕술 관련	반민법 제5조 해당자 관련	반민법 개정	특위 예산관련	반민특위 습격사건 관련	기타
31	2	8	15	1	1	4

위 〈표 1〉중 노덕술 관련 내용은 일부 알려져 있으나, 1949년 『국무회의록』을 통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노덕술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체포당시부터 정치권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었다. 노덕술이 반민파의자로 체포된 날은 1949년 1월 25일이었다. 그런데 그는 1948년 7월 장덕수 저격사건 혐의자에 대한 고문치사사건으로 수배중인 인물이었다.⁶⁾ 그럼에도 노덕술은 체포당시까지 경관 4명이 호위하고, 경찰차를 몰고 다녔으며, 심지어 몇몇 장관집을 출입하고 있었다.⁷⁾

이에 金相敦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은 노덕술이 정부고위층과 연결되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⁸⁾ 尹潽善 서울시장과 金泰善 서울시 경찰국장은 해명보도를 내고,⁹⁾ 내무장관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본 사건을 은폐하려 하였다. 이런 가운데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1월 28일 개최된 제14회 國務會議에서 다음

6) 노덕술은 장덕수 저격사건 혐의자인 朴聖根(25)을 1948년 1월 27일 체포해서, 자백을 강요하다가 절명계 한 후 시체를 한강에 버린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런데 7월 25일 수도경찰청 부청장 金泰日이 수도경찰청에서 신문한다면서 데려간 후 노덕술은 도주했다. 이후 노덕술의 영장은 집행도 반환도 되지 않았다(『서울신문』, 『東亞日報』, 『朝鮮日報』 1948. 7. 28).

7) 『漢城日報』1949. 1. 26

8) 『漢城日報』1949. 1. 26

9) 『東亞日報』, 『朝鮮中央日報』1949. 1. 27.

과 같이 지시하였다.

依法處理하라고 지시했다.¹²⁾

노덕술 被檢에 관하여는 그가 治安技術者임을 비추어 정부가 保證하여서라도 保釋하도록함이 요망되나 有罪時 처벌당함은 無妨하다.¹⁰⁾

노덕술이 체포된 지 불과 3일만에 이승만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노덕술을 “정부가 보증”을 해서라도 석방시킬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승만 정권의 노덕술에 대한 비호는 집요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2월 중순경 김상덕 특위위원장 등을 초청 특위에 자동차를 제공한다는 조건하에 노덕술의 석방을 요청했다.¹¹⁾ 李仁법무장관은 노덕술이 반민특위 사무실내 금고에 수감되었다고 사실 자체를 왜곡했으며, 이승만 대통령은 노덕술을 체포·감금한 특별조사위원회 관계자의 ‘依法處理’를 지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반민특위의 무분별한 亂動은 治安과 民心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터임으로 헌법범위에서 斷乎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시면서, 법무부장관은 노덕술을 反民調査官 2명이 반민특위 사무실내 금고에 2일간 수감하였다는 보고가 有하고 대통령각하는 此불법조사관 2명 및 그 지휘자를 체포하여

단지 서울시 수사과장인 노덕술 문제에 대해 서울시장·경찰국장·내무부장관 등이 변호했고, 심지어 국무회의에서까지 대통령이 직접 석방 대책을 지시했으며, 법무부장관은 사실 자체를 왜곡하면서 반민특위를 압박했다.

이승만정권의 노덕술에 대한 비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특위요인암살음모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 1949년 1월 테러리스트 백민태는 노덕술의 지시에 의해 특위요인들을 암살하려 했었다.¹³⁾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노덕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난수와 흥택희의 선에서 사건을 축소·은폐했다. 주한미대사도 암살음모의 “교사자는 노덕술”이었고, 반면 이승만 정부는 “관록 있는 음모자” 노덕술을 해고하지 않고 오히려 법집행자를 저지하려 했다고 지적했다.¹⁴⁾

아래 <표 2>와 같이 특별조사위원회는 노덕술이 체포된 직후인 1월 31일, 그리고 국무회의가 개최된 직후인 2월 24일 각각 반민피의자

10) 『國務會議錄』1949년, 제14회(1949. 1. 28).

11) National Traitors Act, 1948~1949, 1949. 2. 18.

12) 『國務會議錄』1949년, 제18회(1949. 2. 11).

13) 「判決文」(檀紀4283年刑上제10호, 特委要人暗殺陰謀事件) 1950. 4. 18.

14) National Traitors Act, 1948~1949, 1949. 2. 18.

명단을 공개했다.¹⁵⁾ 특별조사위원회의 반민피의자 명단 공개가 그만큼 사회의 확산도가 컸음을 감안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반민피의자 명단공개로 통해 반민피의자 처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정국을 이끌려왔던 것으로 이해된다. 주한미대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친일과 명단공개는 노덕술사건으로 빚어진 이승만정권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고 지적하였다.¹⁶⁾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공개된 반민피의자 명단도 대부분

일본의 고위직을 수락한 사람들, 일본제국주의 전쟁에 자발적으로 공헌한 사람들, 경찰관으로서 악명을 떨친 인물들이 중심이었다.¹⁷⁾ 이러한 노덕술사건을 둘러싼 반민특위의 적극적 대응

15) 아래 <표>의 1949년 1월 31일 발표된 반민피의자 중 지역별 구분은 단지 체포된 지역별 구분일 뿐 道調查部에서 체포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道調查部는 1월말부터 2월초 조직되어 2~3월부터 반민피의자 체포가 이루어 졌기때문이다.

16) National Traitors Act, 1948~1949, 1949. 2. 26.

17) National Traitors Act, 1948~1949, 1949. 2. 18.

<표 2> 特別調查委員會의 反民者 名單 공개현황

발표날짜	내역	반민피의자
1월 31일	체포자	<서울> : 박홍식(1월 8일), 李鍾榮(10일), 崔麟(13일), 방의석(13일), 金泰錫(13일), 李豐漢(14일), 李升雨(14일), 李聖根(18일), 李琦鎔(18일), 金季洙(21일), 鄭國殷(21일), 盧德述(25일), 李源甫(25일), 劉徹(26일), 曹秉相(27일), 등 15명 <경북> : 朴重陽(21일) 등 1명 <경남> : 金雨英(23일), 河判洛(23일), 魯義柱(25일) 등 3명 <충남> : 金甲淳(28일) 등 1명 <반민피의자의 은닉으로 체포된 자> : 이개재 (1월 24일 노덕술 호위경관), 최영건(同), 유진건(동), 문원식(25일 동), 이승수(25일 노덕술의 운전수), 이두철(25일 노덕술 은닉자) 등 6명
2월 24일	체포·송치자	<1월 8일> 朴興植(送, 朝飛 사장, 종로화신), <1월 10일> 李鍾榮(·, 관동군 촉탁), 1월 13일 崔麟(·, 중추원참의), 方義錫(·, ·), 金泰錫(·, 高刑 과장), <1월 14일> 李豐漢(·, 남작), 李升雨(·, 중추원참의), <1월 18일> 李聖根(·, 每新 사장), 李琦鎔(·, 자작), <1월 21일> 金季洙(·, 만주 총영사), 朴重陽(·, 귀족의원), 鄭國殷(·, 朝日新聞 기자), <1월 25일> 盧德述(·, 고등계형사), 河判洛(·, 악질高刑), 金雨英(중추원참의), 李源甫(고등경찰), <1월 26일> 劉徹(악질헌병), 魯義柱(警視), <1월 27일> 曹秉相(警防團長), 崔燕(경찰최고훈장 拜受), <1월 28일> 金甲淳(중추원참의), 1월 29일 徐容出(고등경찰), 1월 31일 林昌株(중추원참의), 文明琦(비행기 헌납), 南學鳳(고등경찰), <2월 2일> 李斗喆(노덕술 은닉), <2월 4일> 金宇泳(경찰충견時委), <2월 7일> 崔南甫(친일문화인), 朴在洪(군 1등통역), 李光洙(친일문화인), <2월 8일> 金惠基(고등형사), <2월 9일> 金極一(고등계형사), <2월 11일> 慎鍾項(비행기공업), <2월 15일> 白樂承(군수공업), 李翠星(반민방해), <2월 18일> 裴貞子(伊藤博文 양녀), <2월 19일> 張于炯(헌병 밀정), <2월 20일> 金大羽(황국신민誓詞 장본인), <2월 21일> 張憲植(중추원참의), 高漢承(중추원참의), 韓錫源(일본기독교화운동), <2월 22일> 楊載弘(청년고문왕, 고등계형사), 金正浩(비행기공업), 鄭仁果(總進會 회장, 목사), 朴熙道(『東洋之光』주관), 李東旭(신사참배 장본인, 목사) 등

참고 : 『漢城日報』1949. 2. 1, 『서울신문』1949. 2. 25·4. 3 『京鄉新聞』1949. 7. 28.

은 1949년 초 반민특위가 “기세좋게 활동”하고 국민들은 권력층의 숙청을 열망하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다. 그러나 1949년 6월 반민특위습격사건, 국회프락치사건 등 일련의 과정속에서 반민특위 관계자들은 사퇴하면서 더 이상의 대응은 나오지 못했다.

1949년 2월 盧德述 석방에 대한 『國務會議』 내용은 반민특위와 이승만정권의 대립과 갈등 양상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경찰관의 체포마저도 국무회의에서 논의하고, 이승만대통령이 직접 저지하려 했다는 사실에서 반민특위의 친일파숙청 활동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였다.

Ⅲ. 반민법 제5조 해당자에 대한 건

1. 이승만대통령의 “依命親傳”

1949년 『國務會議錄』의 반민특위에 관한 기록 중 상당수는 반민법 제5조 해당자와 관련된 기록이다. 반민법 제5조 해당자는 일제시기 “고등관 3등급 이상, 훈5등급 이상의 관공리 또는 헌병·헌병보·고등경찰의 직에 있던 자” 중 현재 공직에 있는 자로, 일반적으로 政府官僚·軍·警察 등 정부내 친일파를 의미한다. 결국 반민법 제5조 해당자의 숙청은 이승만정권의 통치조직의 제거와 동일한 의미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1949년 1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에게 반민법 제5조 해당자를 1월 31일까지 공직에서 자진 추방시킬 것을 요청했다.¹⁸⁾ 이와 관련해 1949년 『國務會議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依命親傳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를 秘密調査하여 선처하라”는 〈通牒〉를 내렸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이 정부내 친일파숙청을 반대해 왔다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정부내 친일파숙청과 관련해 “依命親傳”으로 〈통첩〉을 보냈다는 구체적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國務會議錄』에 의하면, 1949년 2월 4일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依命親傳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를 秘密調査하여 선처하라”는 〈通牒〉를 내렸다.

대통령의 依命親傳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를 秘密調査하여 선처하라는 〈通牒〉을 관리들이 알게되자 동요가 심하며, 대통령담화와 相違가 有함을 보고하고, 대통령께서 此事 처리하실 것을 報告하다.¹⁹⁾

이에 총무처는 정부내 반민법 제5조 해당자

18) 『서울신문』1949. 1. 22

19) 『國務會議錄』1949년, 제16회(1949. 2. 4).

에 대한 〈調査書〉를 작성해서 1949년 1월 27일 공무원으로서 반민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는 1월 31일까지 조사·보고하도록 관할기관에 시달렸다.²⁰⁾ 서울시도 각 구청에 동회장, 평의원, 민보단 등의 역원들 중에서 반민피의자는 자발적으로 사직할 것을 통보했다.²¹⁾ 총무처장의 지시는 1949년 2월 1일 법무부장관을 통해 검찰청, 각형무소, 소년원 등에도 하달되었고,²²⁾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2월 5일 대검찰청에서 재차 전달되었다.²³⁾ 그런데 총무처가 조사한 〈調査書〉는 현직명, 성명, 생년월일, 본적, 주소, 現업무소 등 극히 형식적인 내용이었다.²⁴⁾ 주한미대사도 이승만대통령의 지시는 총무처장에게 해임될 공직자의 수와 직위 등을 단순히 조사할 것에 대한 지시였다고 분석했다.²⁵⁾

그런데 이러한 총무처의 형식적인 조사마저도 관계기관의 탄원이 빚발치자, 윤치영 내무장관은 이승만대통령에게 대책마련을 건의했고, 이승만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동요를 무마시키기 위해 오히려 총무처장을 문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고 1949년 2월 9일 “反民特調法 제5조 해당 전국관리 조사선처 依命親傳 건 취소 지령”을 다시 내렸다.²⁶⁾ 이후 총무처장은 공보부를 통해 어떤 해임도 손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총무처장, 국무

총리, 이승만 대통령은 총무처의 조사가 “소속 절차를 알아보라는 것”을 오해한 것으로 “업무상 착오”라며 해명보도를 내 보냈다.²⁷⁾ 당시 정부는 “말과 행동”으로 반민법 수행을 저지하고 있었다. 공직자들도 “행위에 대한 혐의”를 풀려고 하기보다는 단지 숙청시기를 연기하려는 분위기였다.²⁸⁾

결국 1949년 『國務會議錄』은 반민법 제5조 해당자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이 단선적이지 않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이승만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依命親傳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를 秘密調査하여 선처하라는 〈通牒〉”을 통해 정부내 친일파숙청에 대해 형식적 조치를 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공직사회가 동요하자 총무처장을 문책하면서 무마시켰다.

20) 『自由新聞』1949. 1. 28.

21) 『自由新聞』1949. 2. 9

22) 大檢庶 제148호, 총무처장→법무장관→검찰총장에게」1949. 2. 1.

23) 「大檢庶, 검찰청장→고등검찰청장에게」1949. 2. 5.

24) 大檢庶 제148호, 총무처장→법무장관→검찰총장에게」1949. 2. 1.

25) National Traitors Act, 1948~1949, 1949. 2. 18.

26) 『國務會議錄』1949년, 제17회(1949. 2. 9).

27) 공보처 발표문 『獨立新聞』1949. 2. 10 ; 총무처장의 담화문 : 『自由新聞』1949. 2. 11, 이범석 국무총리의 담화문 『獨立新聞』1949. 2. 12 ;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문 : 『大東新聞』1949. 2. 16.

28) National Traitors Act, 1948~1949, 1949. 2. 18.

2. 국무위원·특위요인의 “合同座談會”

이런 가운데 이승만 정권은 반민법 제5조 해당자에 대한 문제를 반민특위와 직접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1949년 『國務會議錄』에 의하면, 1949년 4월 4일 윤치영 내무부장은 <反民特委와의 交渉의 件>을 통해 “政府와 特委와의 合同座談會에서 상호 협조할 것을 언약하고, 국무총리가 정부직원에 관한 특위조사를 통고하여 주면 정부가 처리할 것이니 특위는 직접행동을 삼갈 것과 국회와 특위측의 자가숙청을 촉구한바, 특위도 정부측의 강경한 태도를 인식한 듯하다”고 보고했다.²⁹⁾

그리고 1949년 4월 8일 이범석 국무총리는 <反民特委 幹部와의 會談結果 報告의 件>을 다음과 같이 재차 보고하였다.

전반 국무위원과 반민특위 조사, 검찰, 재판 각부 간부사이에 열린 連席會議에서, ①政府軍警은 직접착수치 않을 것, ② 정부공무원은 자가숙청케 하고 특위측 조사자는 명단을 정부에 移交하여 처리케 할 것, ③ 국회측도 자가숙청할 것을 결의하였고 특히 금일 김상덕 위원장과 회담하여 此 취지를 상호회담 발표하기로 약속하였음³⁰⁾

軍과 政府내 친일파숙청문제 등을 둘러싸고

특위와 정부의 타협의혹은 제기된 바 있지만, 이범석 등 국무위원과 김상덕 등 특위위원이 “合同座談會”를 개최해서 타협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1949년 『國務會議錄』에는 “合同座談會”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고 갔는지 그 정확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지만, 政府·軍·경찰 등 반민법 제5조 해당자의 숙청문제는 정부에서 주관하고 특위는 정부에서 조사한 명단을 받을 것, 그리고 국회도 자가숙청할 것을 합의한 것은 명확하다. 실제 반민법 공소시효가 끝난 1949년 8월 31일까지 반민특위가 조사한 688명의 반민피의자 중 반민법 제5조 해당자는 단 15명이고, 軍출신자는 忠淸北道調查部에서 체포된 朴斗榮(육군대좌) 1명뿐이었다.³¹⁾ 결과적으로 반민특위가 정부의 반민법 제5조 해당자, 軍관계자에 대한 처벌의지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사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특위가 왜 정부측의 타협안을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이다. 특위가 정부의 타협안을 받아들인 정확한 이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반민법 제5조 해당자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에도 있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돈 자체가 친일협의로

29) 『國務會議錄』1949년, 제37회(1949. 4. 4).

30) 『國務會議錄』1949년, 제39회(1949. 4. 8).

31) 『聯合新聞』1949. 5. 19

정부의 공격을 받았고,³²⁾ 申性均·李鍾麟·李恒發·陳憲植·韓嚴回 등 제헌국회의원들도 반민법 제5조 해당자로 논란이 되었다.³³⁾ 즉 반민법 제5조 해당자는 정부만이 아니라 반민특위와 국회에도 있었던 상황에서, 반민법 제5조 해당자의 조사는 특별조사위원회·제헌국회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음모로도 작용했다. 정부측에서는 이점을 악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 “合同座談會”의 합의사항 중에는 정부내 친일파숙청문제 만이 아니라 국회의 자가숙청문제도 포함된 사실은 특위에 대한 정부의 ‘압력’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특위는 특위와 국회내 친일파숙청이 단행되지 못한 처지에서 政府內 親日派肅清 문제까지 안고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부의 타협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특위·국무위원의 타협속에서 국회와 정부의 반민법 제5조 해당자에 대한 자가숙청은 단 1건도 없었다.

IV. 반민법 개정에 대한 견

이승만정권은 노덕술사건, 정부내 친일파숙청 문제에 대해 각각 논의했지만, 이들 문제의 근본적 대책은 반민법 개정 → 반민특위의 해체로 인식했다. 1949년 『國務會議錄』의 반민특위 기록 총 31건 중 반민법 개정 건은 15건으로 가

장 많다. 이중 반민특위 와해후의 법률적 후속 조치에 대한 4건을 제외하더라도,³⁴⁾ 반민법 개정과 직접 관련된 건수만도 다음과 같이 11건이다.

32) 김상돈에 대한 공격은 정부의 반민특위에 대한 도덕성 훼손 공작 중 하나였다. 사실 김상돈은 일제 말기 서울 마포구 서교동 등에서 總代(통반장) 출신이었다. 문제는 김상돈의 친일행위를 서울시경 정보과장 崔雲夏가 중심이 되어 은밀히 내사한 결과라는 사실이다. 소위 특위를 공격하기 위한 헛점을 찾는 가운데 김상돈의 친일혐의를 내사한 것이다. 김태선 시경국장은 이 사실을 이승만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승만대통령은 김상돈의 친일부역설을 언론에 흘리면서 반민특위를 공격하는 무기로 이용했다. 김상돈 사건은 국회로 확대되어 3월 19일 친이승만계열인 朴俊의원은 김상돈의 친일설을 제차 지적하면서 그를 반민특위 부위원장 직에서 해임 할 것을 긴급 발의했다. 해임동의안은 163대 4로 부결되었다. 본 사건에 대해 특별검찰관 金容熙·徐相烈 의원은 “악질친일파들은 반민법을 목살시키기 위하여 제1차로 정부를 움직이려다 실패” “다시 국회를 중심으로 공작도 실패” “악질적 친일파들은 그래도 참회하는 마음이 없이 최후의 발악을 다시 특위 내부를 분열시키려는 악을 쓴 것”이라고 평가했다(길진현, 앞의 책, pp 65~66; 『東亞日報』1949. 3. 11; 『聯合新聞』1949. 4. 17; 『朝鮮日報』1949. 6. 19).

33) 陳憲植의원은 경무국장 이께다(池田)가 중심이 된 清交會 회원이었던 점, 韓嚴回의원은 내선협회 부의장이고, 조선군 보도부장과 친밀한 사이였다는 사시, 李恒發의원은 경무국 촉탁 李覺鍾과 대동민주회를 발기하였는 점, 申性均의원은 전남 곡성면장으로 있을 때 전쟁에 협력한 사실, 李鍾麟의원은 전쟁 중 강연과 문필 등으로 일정에 협력한 사실 등이 논란이 되었다(『京鄉新聞』1949. 8. 27).

34)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소속 기관 폐지에 관한 건>(제87회, 1949. 9. 30), <반민족행위 재판기관 임시조직법안 건>(제99회, 1949. 11. 8), <반민족행위재판기관 임시조직법안>(제108회, 1949. 12. 9),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부속기관 인제에 관한 건>(제113회, 1949. 12. 27).

- 제 7 회, 1949년 1월 12일 (대통령)〈施政一般에 관한 諭示의 件〉
 제12회, 1949년 1월 21일 (대통령)〈施政一般에 관한 諭示의 件〉
 제13회, 1949년 1월 24일 (법 무)〈反民特調機關 관계법 개정에 관한 건〉
 제15회, 1949년 2월 1일 ① (대통령)〈반민법 시행에 관한 答覆의 件〉
 ② (법 무)〈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 건〉
 제19회, 1949년 2월 15일 (법 무)〈반민법 개정안에 관한 건〉
 제21회, 1949년 2월 22일 (법 무)〈반민법 개정안에 관한 건〉
 제24회, 1949년 3월 4일 (대통령)〈施政一般에 관한 諭示의 件〉
 제35회, 1949년 3월 25일 (대통령)〈반민법에 관한 대책 수립의 건〉
 제36회, 1949년 3월 30일 (대통령)〈施政一般에 관한 諭示의 件〉
 제63회, 1949년 7월 1일 (대통령)〈施政一般에 관한 諭示의 件〉
 제65회, 1949년 7월 12일 (법 무)〈반민족행위처벌법 중 개정법률안 건〉

반민특위가 와해된 1949년 8월말까지 국무회의는 총 80여회 개최되었다. 이중 11회에 걸쳐 반민법 개정 문제가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정부에서 반민법 개정을 당시 최대 현안 중 하나로 인식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관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민법 개정이 유로 내세운 소위 ‘치안문란’은 단순히 변명만은 아니었다. 1949년 『國務會議錄』에서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제주 4·3항쟁 등 소위 ‘치안문제’였다. 남한 곳곳의 무장항쟁, 남북한의 대치라는 정국 속에서 경찰·사회 지도급인사 등 이승만정권의 수족의 제거는 이승만정권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에 이승만정권은 반민법 개정→반민특위의 조속한 종단을 기초로 친일

문제로 논란이 된 경찰권을 결집시켜 소위 ‘치안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다.

1949년 『國務會議錄』을 중심으로 이승만정권의 반민법 개정논의를 살펴보면 크게 3시기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다. 제1시기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인정하지 않고 반민특위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편하려 했던 1949년 2월까지의 시기이다. 반민법 전면 개편은 1949년 1월부터 확인되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은 반민특위 활동이 본격화되자 “反民特調에서 입법, 행정, 사법을 행하여 정부와 遊離됨은 不可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늦어도 1월 12일부터 李仁법무장관은 “合法 개정안을 기초”하고 있었다.³⁵⁾

35) 『國務會議錄』1949년, 제7회(1949. 1. 12).

이 시기 반민법 개정방향은 국회=조사, 처벌=정부라는 소위 三權分立이었다. 당시 이승만대통령의 반민법 개정요구는 상당히 집요했다. 일례로 1949년 2월 9일 이승만은 특위에 검찰·사법·행정권을 인정해서 계속 치안과 민심상 중대한 영향이 있다면 “大權을 발동할 작정”이라고 협박하면서 반민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무위원들에게 촉구하기도 했다.³⁶⁾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2월 들어 반민법 개정에 대한 대국민적 명분 쌓기에 들어가,³⁷⁾ 2월 15일 반민법 개정 초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³⁸⁾ 2월 22일 白漢成 법무부차관은 반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고했다.³⁹⁾ 그러나 1949년 2월의 반민법 전면 개편계획은 국회와 각 정치세력의 반발로 관철되지 못했다.

제2시기는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를 인정하면서 공소시효만을 단축하자는 타협적 방식으로 반민법 개정방향을 바꾼 1949년 3월부터 6월까지의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이승만정권의 반민법 개정논리는 三權分立으로만 이해되고 있지만, 三權分立은 반민법 개정을 위한 논리 중 하나였다. 1949년 2월까지의 반민법 전면 개편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이승만대통령은 반민법 개정 실패원인을 “정부의 진의를 국회가 오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특조·특검·특재의 3기관을 다 인정”하나 다만 “일률적으로 비밀리에 조사하여 一面에 처단”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三權分立의 논리를 일시적으로 후퇴시켰다.⁴⁰⁾ 이러한 반민법 개정방향은 반민특위습격사건 직후까지 반영되었다. 1949

36) 『國務會議錄』1949년, 제17회(1949. 2. 9).

37) 2월 2일 발표한 이승만대통령의 담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반민법이 3권분리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특위에서 조사하여 친일파를 정부에 넘기면, 정부는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각각 처리한다는 것이다. ② 조사의 비밀주의 원칙이다. 반민피의자를 신속히 비밀리에 조사하여 검찰에 넘긴 다음 재판에 회부하여, 즉 비밀리에 조사하여 일시에 진행하자는 것이다. ③ 치안문제를 거론하면서 경찰에 대한 예외적 조치의 주문이었다. 즉 “반란분자와 파괴분자”가 곳곳에서 살인방화를 하는 위태로운 이때에 경찰의 “기술과 정력”이 아니면 사태가 어려울 것이므로, 경찰의 기술자들을 아직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漢城日報』1949. 2. 3). 그런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 특경대까지 국회내에 둔것은 정부의 재판과 집행을 믿지 못할거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실제 반민법반대운동, 친일파숙청방해운동의 핵심은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었고, 경찰이 핵심기구였다. 이승만대통령의 담화에서 調査의 ‘秘密主義’ 원칙도 주목된다. 조사의 비밀주의는 정치적 타협, 밀실정치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해 특별조사위원회 및 특별재판부는 모든 사항에 대한 ‘公開主義’ 원칙을 채택했다. 이는 단순히 대국민적 교육으로서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국민적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친일파숙청에 대한 대국민적 힘의 원천이었다. 즉 이승만의 “秘密主義”는 반민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논리였다.

38) 『國務會議錄』1949년, 제19회(1949. 2. 15).

39) 개정안은 『制憲國會速記錄』, 제2회 제37호(1949. 2. 22) 참고.

40) 『國務會議錄』1949년, 제26회(1949. 3. 4).

년 6월 7일 국무총리는 반민특위습격사건에 대한 국회요구에 대해 정부의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특위·특재·특검은 인정하되 특경대는 불법이라는 점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① 정부는 시국수습을 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국무총리 이하 총퇴진 할 것 ② 특위경찰해산 強權 발동으로 惹起된 것을 원상회복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 ③ 이상 결의를 시행할 때까지 법안 예산 등 정부안은 심의치 않을 것을 결의하고 휴회에 들어간 사실을 대하여, ①항에 대하여는 憲法違反임으로 不願할 것, ②항에 대해서는 특경대 원상복구는 不法으로 거절하고, 책임자 처벌은 필요 이상의 행동에 대하여만 고려 할 것 ③ 반민법 운영에 관하여는 대통령 각하 부동의 원칙대로 특위, 특검, 특재는 인정 정부에서 협조하되 특경대는 폐해가 많음으로 폐지케 하고 특위, 특검은 비밀조사하여, 일절명단 작성하여 검찰행정기관에 의뢰하여 일시 검거하도록 주장할 것⁴¹⁾

이러한 관점에서 3월 25일 이승만대통령은 법무장관만이 아니라 “국무총리, 내무장관, 국방장관”에게 “정부의 확고한 대책수립”을 지시하고,⁴²⁾ 3월 30일 “반민법 대책”이 “급속 추진이 요망”되는 사업임을 재차 촉구했다.⁴³⁾ 이승

만대통령의 대책마련 지시는 1949년 4월부터 ‘공소시효’ 단축안으로 나왔다. 4월 22일 정도영·나용균의원 등 9인은 1949년 6월로 공소시효를 단축할 것을 제안했고,⁴⁴⁾ 5월 26일에는 李聖學의원 등 14명이 1949년 8월말로 반민법 공소시효를 단축하자는 개정안을 제출했다.⁴⁵⁾ 그러나 1949년 4~5월 공소시효 단축안도 모두 관철되지 못했다.

제3시기는 이승만정권의 ‘6월 총공세’ 후 공소시효단축안이 통과된 이후의 시기이다. 1949년 6월 반민특위습격사건, 국회프락치사건, 김구암살 등 일련의 반공정국을 거치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법 개정과 반민특위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반민법에 관하여는 陳容의 개정과 진행방법을 강구하라고 국회에도 발언하였으나 조속한 기한내에 조사보고만하여 일률적 해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진 조사집행케 하고자 함⁴⁶⁾

41) 『國務會議錄』1949년, 제56회(1949. 6. 7).

42) 『國務會議錄』1949년, 제35회(1949. 3. 25).

43) 『國務會議錄』1949년, 제36회(1949. 3. 30).

44) 『東亞日報』1949. 4. 25

45) 제안자 : 洪吉善, 李周衡, 尹致暎, 崔圭鈺, 俞鎮洪, 權炳魯, 李要漢, 朴順碩, 陳憲植, 宋鳳海, 金俊淵, 白南採, 趙鍾勝 등(『聯合新聞』1949. 5. 28)

46) 『國務會議錄』1949년, 제63회(1949. 7. 1).

1949년 7월 1일자 이승만대통령의 지시는 법무장관을 사임하고 국회에 돌아온 이인과 광상훈의원 등이 중심이 되어 7월 6일 공소시효 단축안으로 통과되었다. 공소시효가 단축되자 1949년 10월 4일 특별검찰부와 특별재판부의 업무는 대검찰청과 대법원으로 각각 넘어갔다. 이로써 이승만 대통령의 반민법 전면 개편방침은 모두 관철되었다. 그리고 1951년 2월 8일 國務會議에서 “임시조직법”의 폐지마저도 논의하여,⁴⁷⁾ 반민법에 의한 “공소 중인 사건”은 모두 “공소취소”되고 본 법에 의한 “판결”도 모두 “효력이 상실” 되어,⁴⁸⁾ 친일파숙청문제는 역사 속에 묻혔다.

결국 반민법 개정은 특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金九의 지적처럼,⁴⁹⁾ 반민특위에서 특별검찰부·특별재판부 및 특경대 등을 폐지시켜, 반민특위 자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1949년 『國務會議錄』은 그 자체로 완결적 자료는 아니나, 기존 연구에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나, 부정확하게 알려진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무엇보다도 반민특위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이승만

정권 최고통치자의 결정이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 가치가 높다.

1949년 『國務會議錄』의 기록 중 노덕술 문제나, 반민법 개정문제 등은 기존연구와 질적 차이는 없으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승만대통령의 반민법 개정요구는 알려진 사실 이상으로 집요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례로 이승만 대통령은 “大權을 발동”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반민법의 조속한 개정을 국무위원들에게 촉구했다. 그리고 이승만정권의 반민법 개정논리로 알려진 三權分立의 논리는 일괄된 논리는 아니었다. 三權分立의 논리는 반민특위 활동 초기, 즉 1949년 2월까지의 논리로, 이후 이승만정권은 반민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특검과 특재를 인정하면서 三權分立의 논리를 후퇴시켰다. 결국 반민법 개정의 핵심논리는 소위 ‘치안문란’이었다.

1949년 『國務會議錄』의 반민특위 기록 중 주목되는 내용은 이승만대통령이 “依命親傳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를 秘密調査하여 선처”하라는 〈通牒〉를 보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47) 『國務會議錄』1951년, 제 회(1951. 2. 13).

48) 「반민족행위처벌법등폐지에관한법률」, 제176호, 1951. 2. 14

49) 『獨立新聞』1949. 2. 19.

이승만대통령은 정부내 친일파숙청을 반대해 왔다는 점은 많이 지적되어 왔지만, 이승만대통령이 정부내 친일파숙청과 관련해 “依命親傳”으로 <통첩>을 보냈다는 구체적 행위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리고 1949년『國務會議錄』에는 반민법 제5조 해당자에 대한 이승만 대통령의 대응이 단선적이지 않은 않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있다. 이승만대통령은 “依命親傳”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를 秘密調査하여 “선처”하라는 <通牒>을 시달렸지만, 이러한 형식적인 조치에도 공직사회가 동요하자 이승만대통령은 자신의 지시를 수행하던 총무처장을 오히려 문책하면서 사건을 무마시켰다.

한편 1949년『國務會議錄』에는 정부가 반민법 제5조 해당자 문제를 특위와 협의하기 위해 “合同座談會”를 개최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軍과 政府내 반민법 제5조 해당자 처리에 대해 특위와 정부가 타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지만, 이범석 등 국무위원과 김상덕 등 특위위원이 “合同座談會”를 개최해서 타협했다는 구체적 사실이 확인된 것도『國務會議錄』이 처음이다. “合同座談會”에서 어떤 이야기가 주고 갔는지 정확한 내용은 확

인되지 않지만, 정부관료·軍·경찰 등 반민법 제5조 해당자의 숙청문제는 정부에서 주관하고 특위는 정부에서 조사한 명단을 받을 것을, 그리고 국회도 자가숙청 할 것을 합의한 것은 명확하다. 제주 4·3항쟁, 남한 곳곳의 무장항쟁, 남북한의 대치라는 상황속에서 정부관료·軍·경찰 등 반민법 제5조 해당자의 숙청은 이승만정권의 붕괴를 의미했다. 이로 인해 이승만정권은 반민법 제5조 해당자의 문제를 특위와 타협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은 국회내 친일파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위에 ‘압력’을 가했다. 반면 특위는 반민법 제5조 해당자가 정부만이 아니라 국회에도 존재하고 김상돈과 같이 국회와 특위의 구성원이 친일혐의로 오히려 정부의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반민법 제5조 해당자 문제를 반민특위 활동 초기부터 안고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정부의 타협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상에서 1949년『국무회의록』을 반민특위라는 한 문제만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이후『국무회의록』의 총체적 접근은 1949년 남한사회를 이해하는 핵심기록으로 이해된다.